

광주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536325 판결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피 고 1. B

소송대리인 C

2. D조합

소송대리인 E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피고 B는 F에게 전남 무안군 G 임야 30225㎡ 중 4297/3022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8. 2. 20. 접수 제25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D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F에게 전남 무안군 G 임야 30225㎡ 중 4297/3022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2. 7. 12. 접수 제134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F은 1988. 9. 28.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취득하였다.
- F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1998. 2. 18.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H에게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8. 2. 20. 접수 제25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은 2002. 2. 28. 망 I에게 이전되었고, 2019. 6.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1. 11. 23.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
- 피고 조합은 2001. 11. 30. F에게 5,000,000원을 상환기한 2002. 11. 30.까지, 이자 연 9.257%,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F은 2012. 11. 30.부터 2015. 12. 1.까지 원금으로 합계 7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5. 11. 30. F과 위 대출의 기한을 2016. 11. 30.까지로 연장하는 기한연장의 추가약정을 하였다. 피고 조합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5. 31.자 2017차835 지급명령으로 F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 2017. 5. 28.까지의 원리금 5,092,209원 및 그 중 대여잔금 4,3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9. 2. 확정되었다.
- 피고 조합은 2002. 7. 11. F에게 10,800,000원을 상환기한 2003. 7. 11.까지, 이자 연 10.767%, 연체이자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F은 2012. 7. 19.부터 2016. 1. 11.까지 원금으로 합계 733,6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5. 7. 10. F과 위 대출의 기한을 2016. 7.

11.까지로 연장하는 기한연장의 추가약정을 하였다. 피고 조합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9. 22.자 2016차1029 지급명령으로 F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 2016. 9. 19.까지의 원리금 11,038,478원 및 그 중 대여잔금 10,066,400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 확정되었다.

○ F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2002. 7. 11. 채권최고액 30,000,000원, 피담보채무를 F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담보로 정하는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조합에게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2. 7. 12.접수 제134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자 2018차전1072197 지급명령으로 F에 대하여 8,189,411원 및 그 중 3,022,821원에 대하여 2008. 1.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3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8. 7. 24. 확정되었다.

○ F의 처 J은 피고 B에게 2020. 12. 10.부터 2021. 8. 21.까지 매월 100,000원, 2021. 9. 18.부터 2021. 11. 22.까지 매월 60,000원을 송금하였다.

○ F은 현재 적극재산으로 개별공시지가 기준 14,781,68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원리금, 피고 조합에 대한 채무, 2002. 3. 12. 발생한 K조합 2,970,000원 채무, 2002. 7. 11. 발생한 L조합(지역) 10,400,000원 채무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가 3호증, 을나 1, 2,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M에 대한 신용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근저당권은 1998. 2. 20. 설정 후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는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8. 2. 20. 접수 제25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는 이에 대하여, F이 2001년 초경 H에 대한 50,000,000원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망 I으로부터 2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F이 망 I에 대한 채무를 피고에게 승인하였으며, F의 배우자인 J이 F의 지시에 의해 2020. 12. 10.부터 피고에게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망 I에 대한 채무를 피고에게 승인하였는지에 관하여 을가 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F의 처 J이 피고 B에게 2020. 12. 10.부터 2021. 11. 22.까지 월 100,000원 또는 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상 위 송금사실 자체만으로 F이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조합의 근저당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조합은 각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현재 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1. 11. 30. 5,000,000원 대출의 경우 피고 조합이 F으로부터 2012. 11. 30.부터 2015. 12. 1.까지 원금 합계 700,000원을 변제받았고 2016. 11. 30.까지 기한을 연장한 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5. 31.자 2017차835 지급명령 및 2017. 9. 2. 지급명령 확정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2002. 7. 11. 10,800,000원 대출의 경우 피고 조합이 F으로부터 2012. 7. 19.부터 2016. 1. 11.까지 원금 합계 733,600원을 변제받았고, 2016. 7. 11.까지 기한을 연장한 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9. 22.자 2016차1029 지급명령 및 2016. 11. 1. 지급명령 확정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석